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 : 김정환 의원 외 23명

나. 의안번호 : 제3032호

다. 발의일자 : 2022. 01. 19

라. 회부일자 : 2022. 01. 25

2. 제 안 사 유

- 수도요금 인상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였으나,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수도요금 감면을 추가적으로 연장 시행할 필요가 있음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 등의 수도요금 감면 시기를 2022년 6월 납기분까지 연장함(안 제31조 제1항제8호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,
「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」 제11조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수도요금(상수도요금) 감면 적용기한을 금년 6월 납기분까지로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지난 제300회 임시회 시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6개월¹⁾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(50%)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였으며, 지난해 6개월간 252,833개 수전에 대해 270억 8천6백만원²⁾의 수도요금을 감면한 바 있음.

〈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현황(‘21.7 ~ 12월)〉

건 수	감면금액	일반회계 보전금액	비 고
252,833수전	27,086백만원	17,888백만원	직권 250,811수전 신청 2,022수전 ³⁾

-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수도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강화(‘21.12.16)되었고 상당 기간 지속되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서울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연장 등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을 증액⁴⁾한 바 있으며, 서울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

1) 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적용

2) 감면 추진 당시 257천 수전을 대상으로 280억원 감면 규모 예상

3) 신청대상 수전수(9,359개) 대비 22%

4) 6개월 수도요금 감면 연장을 위해 330억원 편성(일반회계(소상공인정책담당관))

지원대책을 수립⁵⁾한 바 있음.

따라서 동 조례안은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연장('22.1 ~ 6월)을 위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,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 감면 연장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- 다만, 동 조례안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급수업종은 일반용과 욕탕용이지만, 2022년 1월부터 급수업종 중 공공용이 일반용에 통합됨에 따라 기존 월 300^{m³} 이하를 사용하는 공공기관⁶⁾까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바, 동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정에 단서⁷⁾를 추가하여 공공성을 가진 공공기관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.

5)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('22.1월)

6) “기존 공공용” 급수업종에서 300^{m³} 이하 사용자 현황

구 분	계	공공시설	유치원, 학교	의료기관	종교단체	준공업지역 공장	기타 및 미분류
개 소 (구성비%)	14,508 (100)	2,383 (16.4)	676 (4.7)	331 (2.3)	2,391 (16.5)	194 (1.3)	8,529 (58.8)
월평균 사용량(^{m³})	49.1	53.7	115.0	130.5	46.0	82.7	37.9

7) “다만, 300^{m³} 이하 수도사용자 중 2021년 12월 31일 당시 급수업종이 공공용이었던 경우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한다.”